◉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-221호

지식경제부고시 제2013-35호(2013. 2. 14.)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, 강원도고시 제2014-358호(2014. 9. 5.)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,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-171호(2015. 8. 10.)로 개발계획 변경, 강원도고시 제2017-533호(2017. 12. 15.), 강원도고시 제2018-504호(2018. 12. 26.), 강원도고시 제2019-187호(2019. 5. 17.), 강원도고시 제2021-222호(2021. 6. 4.), 강원도고시 제2021-413호(2021. 11. 19.), 강원도고시 제2023-100호(2023. 3. 24.)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에 대하여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30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

◆ 주요 변경사유

○ 옥계지구 기업유치 방안을 확대하고 유치환경에 적합한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 등을 반영하여 유치업종을 확대하고, 국내기업 유치 확대 및 전략산업 육성 중점화를 통한 지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를 축소하고자 개발계획 변경

- **(산업유치계획 변경)** 핵심전략산업 등 업종추가
 * 기정 : 1차 금속 제조업(C24), 연구개발업(M70)
 * 변경 :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(C23), 1차금속 제조업(C24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전기장비 제조업(C28),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), 연구개발업(M70)

- **(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축소)**
 * 기정 : 121,800㎡ → 변경 : 14,838.2㎡ (감 106,961.8㎡)

◆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

1. 경제자유구역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: 변경없음

가. 명칭: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

나. 위치: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

다. 면적: 383,029.2㎡

2.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: 변경없음

3. 개발사업의 시행자 : 변경없음

가. 시행자 : 강원특별자치도지사

나. 주 소 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(봉의동)

4.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: 변경없음

가. 개발기간 : 2013년 ~ 2024년 (12년간)

나. 시행방법 : 강원특별자치도 직접개발 후 분양·임대

5. 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법 : 변경

가. 사업비 내역 : 변경 (단위 : 억 원)

구 분	계	보상비	기반시설비	조성비	기 타
기 정	573	192	112	267	2
변 경	578	205	125	248	-
증 감	증)5	증)13	증)13	감)19	감)2

나. 연도별 추자계획 : 변경

(기정) (단위 : 억 원)

구 분	계	~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기 정	573	11	1	63	184	179	135

(변경) (단위 : 억 원)

구 분	계	~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변 경	578	259	179	134	0.5	0.2	5.3

다. 재원조달방법 : 변경 (단위 : 억 원)

구 분	계	국 비	도 비	시 비	민 자
기 정	573	29	536.6	7.4	-
변 경	578	28	542.6	7.4	-
증 감	증)5	감)1	증)6	-	-

6. 토지이용계획 : 변경

가. 토지이용계획 : 변경

구 분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383,029.2	100.0	-
산업유통시설용지	200,590.6	52.4	-
산업시설용지	150,191.4	39.2	○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면적 축소 - 기정 : 121,800㎡ - 변경 : 14,838.2㎡ (감 106,961.8㎡)
연구시설용지	50,399.2	13.2	-
공공시설용지	182,438.6	47.6	-
도로	83,828.5	21.9	-
보행자도로	1,679.7	0.4	-
주차장	2,306.0	0.6	-
공공공지	4,419.4	1.2	-
광장	48,270.5	12.6	-
녹지	31,754.8	8.3	-
유수지	5,494.5	1.4	-
수도공급설비	378.9	0.1	-
유보지	4,306.3	1.1	-

7. 주요 기반시설계획 : 변경

가. 용수공급계획 : 변경

○ 옥계지구 내 용수 수요량 : 당초 1,009.41㎥/일 ⇒ 변경 731.72㎥/일 (감 277.69㎥/일)

나. 하수처리계획 : 변경

○ 옥계지구 내 오·폐수량 : 당초 250.59㎥/일 ⇒ 변경 284.92㎥/일 (증 34.33㎥/일)

다. 에너지공급계획 : 변경

○ 산업시설 용지(제조업) 열 수요 : 변경

구 분	면 적(㎡)	직접열사용량 (Gcal/년)	간접열사용량 (Gcal/년)	합 계 (Gcal/년)
기 정	150,191.4	97,138.0	14,004.0	111,142.0
변 경	150,191.4	84,203.0	17,303.1	101,506.1
증 감	-	감)12,935.0	증)3,299.1	감)9,635.9

○ 연구시설 용지 열 수요 : 변경없음

구 분	난방면적 (㎡)	최대열부하(Mcal/h)			연간열부하(Gcal/년)		
		난방부하	급탕부하	열부하	난방부하	급탕부하	열부하
연구시설용지	112,138	7,377	561	7,938	4,946	1,020	5,966

○ 열밀도 산정 : 변경

구 분	최대열부하량(Gcal/h)	개발면적(㎢)	열밀도((gcal/㎢・h)
기 정	12.64	0.38	33.0
변 경	15.13	0.38	39.8
증 감	증)2.49	-	증)6.8

○ 집단에너지계획 타당성검토 : 변경

항 목	요 건	사업지구			판 정	비 고
		기 정	변 경	증 감		
연료사용량 (간접열)	연간 5.0만toe 이상	0.2	0.2	-	×	-
열밀도	60.0Gcal/㎢・hr 이상	33.0	39.8	증)6.8	×	-
에너지 생산비율	열생산 용량이 전력생산용량을 초과할 것	해당없음	해당없음	-	×	-
발전시설 용량	2만KW 이상	해당없음	해당없음	-	×	-

라. 전력공급계획 : 변경

구 분		전력수요 합 계 (KW)	산업유통시설용지			공공시설용지		
			부지면적 (㎡)	전력수요 (KW)	총설비용량 (kVA)	부지면적 (㎡)	전력수요 (KW)	총설비용량 (kVA)
전력 수요 예측	기 정	30,193	200,590.6	30,121	29,936	182,438.6	72	74
	변 경	25,144	200,590.6	25,072	25,236	182,438.6	72	74
	증 감	감)5,049	-	감)5,049	감)4,700	-	-	-

8.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: 변경

가. 인구수용계획 : 변경

구 분	계	상 업 업 무	산업유통시설			관 광	공공 및 기타
			기 정	변 경	증 감		
상근인구(인)	889	-	863	889	증)26	-	-
총 유발인구(인)	1,454	-	1,411	1,454	증)43	-	-

9. 교통처리계획 : 변경없음

10. 산업유치계획 : 변경

가. 유치업종 : 변경

구 분	주요 업종 (한국표준산업분류, 중분류)	
	기 정	변 경
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	C24. 제1차금속 제조업 M70. 연구개발업	C23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. 제1차금속 제조업 C25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 C28. 전기장비 제조업 C29.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M70. 연구개발업

나. 업종별 배치계획 : 변경

(기 정) : 위치의 지정 없이 물량(면적)으로 관리

(변 경) :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)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 배치계획 확정(타 업종의 경우 물량으로 관리하고 유치여건에 따라 배치)

다. 업종별 배치계획도 : 게재 생략(도서 열람방법 참조)

11. 보건의료·교육·복지시설 설치계획 : 변경없음

12. 환경보전계획 : 변경

가. 폐기물 처리계획 : 변경

구 분		폐기물처리량(ton/일)						
		계	생활폐기물		사업장배출시설계		지정폐기물	
			목표율 (%)	처리량 (ton/일)	목표율 (%)	처리량 (ton/일)	목표율 (%)	처리량 (ton/일)
합 계	기 정	101.1	100.0	0.9	100.0	71.9	100.0	28.3
	변 경	337.9	100.0	0.3	100.0	259.1	100.0	78.5
	증 감	증)236.8	-	감)0.6	-	증)187.2	-	증)50.2
재활용	기 정	84.1	60.0	0.5	93.7	67.4	57.5	16.2
	변 경	226.98	60.0	0.18	70.2	181.9	57.2	44.9
	증 감	증)142.88	-	감)0.32	감)23.5	증)114.5	감)0.3	증)28.7
소 각	기 정	2.1	23.0	0.2	2.6	1.9	-	-
	변 경	24.07	23.0	0.07	1.4	3.6	26.0	20.4
	증 감	증)21.97	-	감)0.13	감)1.2	증)1.7	증)26.0	증)20.4
매 립 (기타 포함)	기 정	14.9	17.0	0.2	3.7	2.6	42.5	12.1
	변 경	86.85	17.0	0.05	28.4	73.6	16.8	13.2
	증 감	증)71.95	-	감)0.15	증)24.7	증)71.0	감)25.7	증)1.1

나. 위생 · 공중보건 : 변경

(기 정)

(1)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 수립

○ 사업부지 현황농도(6가크롬, 카드뮴, 비소) 및 니켈항목이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므로 저감대책을 수립함

○ 배출저감기술 도입

–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소 입주시 원료, 공정특성, 생산제품과 현장여건 및 각 저감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한 배출저감기술 검토계획 수립

○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적용

–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소 입주시 원료, 공정특성, 생산제품과 현장여건 및 저감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한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을 적용

○ 최적 저감시설 설치

–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소 입주시 원료, 공정특성, 생산제품과 현장여건 및 각 저감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저감시설 중 최적의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대기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

○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

–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를 초과하는 6가크롬(Cr6+) 및 카드뮴(Cd), 비소(As)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

○ 추가 저감대책

– 추후 산업단지 내 개별기업 입주시, 상기의 저감방안을 반영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입주기업심사시 활용

(변 경)

(1)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 수립

○ 사업부지 내 비소, 포름알데히드 항목이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므로 배출업체 입주제한 등의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계획

○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방안

-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동개시 전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실시하여 운영 계획

○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

- 입주업체는 시설규모 및 오염물질 종류, 배출량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) 중 최적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, 대기오염물질 영향 최소화 계획

○ 녹지공간 확보

- 주거와 산업지구 분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- 사업지구 운영시 오염물질 확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

○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방안

- 위해도 기준을 만족하는 항목에 대하여 입주업체별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저감할 계획이며,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 및 비소의 경우 본 사업 시행으로 위해도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당물질 배출 사업장을 입주 제한할 계획

(2)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

○ 본 사업 시행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

○ 계획된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운영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, 평가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계획

13.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: 변경

가.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: 변경

(기정) 마그네슘 소재 부품 산업 분야 투자유치 여건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유치

(변경) 핵심전략산업(첨단소재 · 부품산업) 등과 연계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

14.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: 변경

(기정)

○ 초경량 첨단신소재를 활용하여 각종 다이캐스팅, 합금산업 등 국내외 연관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전용 임대단지 등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반영

(변경)

○ 산업 여건 변화(외국인투자유치 중심 → 혁신성장·핵심전략산업 육성)를 반영하고 옥계지구의 기업유치 환경에 적합한 핵심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을 마련하여, 국내기업 입주여건 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와 연계한 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축소 변경 반영

구 분	면 적(㎡)			비 고
	기 정	변 경	증 감	
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	121,800	14,838.2	감)106,961.8	-

※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의 위치는 특정하지 않고 산업시설용지 내 면적으로 계획

15.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
1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건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: 변경없음

17. 문화시설·공원·녹지계획 : 변경없음

18. 도시경관계획 : 변경없음

19.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: 해당없음

20.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: 변경없음

21.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22.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: 해당없음

23.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·수립·확정·승인·변경 등 의제사항 : 변경

○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

24.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

○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(033-539-7635)에서 열람할 수 있음